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44
------	------

발의연월일 : 2010. 8. 19.

발 의 자 : 이정임 의원의 인

1. 제안이유

-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범죄예방 단체의 요건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범죄예방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범죄피해 사망 시민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10. 7. 26.(월) ~ 2010. 8. 15.(일)(20일간)
- 의견제출
 - 제 출 자 : 제천시장(자치행정과장)
 - 내 용
 -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의거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가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상을 위해 국가단체로 운영되는 위원회(법무부 산하의 “범죄예방제천지역협의회”와 검찰청 산하의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7개단체)를 간섭하게 되는 상황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국가단체 위원회를 간섭하게 되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단체 위원회와 갈등이 예상되므로,
 - 조례에 있는 “제천시지역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국가단체 위원회에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본 조례에서는 “제천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시장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안중 “제천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관련 8개조문(제6조 ~ 제12조, 제16조) 삭제
 -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 : 아동 · 청소년 ⇒ 시민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붙 임 :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안 1부. 끝.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10. .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제천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다만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특성상 사

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